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0. 7. 16.)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경기]

【 목 차 】

1.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1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17

<의안번호 제2010 - 26호>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0. 6.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0. 7. 8.

II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망”구축과 함께 신청 및 조사, 사후관리 등이 개인 또는 가구단위로 통합 수행됨에 따라
- 종전 수행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업무처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위한 자격요건으로서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고 보험료의 세부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의를 변경함

- 현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미만인 자
- 개정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액 합산금액이 월10,400원 미만인 세대

나. 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세부 선정기준은 그 지원대상이 되는 세대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각각 제2조와 제3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칙으로 위임해 놓은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군수가 결정토록 함(안 제3조, 제5조).

다. 지원대상 세대에 직접 지급하던 보험료의 지원 방법을 공단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4조)

라. 그 밖에 조례의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1조, 제6조, 제7조).

IV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조, 제6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조

○ 「아동복지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본예산에서 확보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0. 5. 12. ~ 5. 3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V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소득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는 동조례 시행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저소득계층”의 선정기준을 보면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액 합산금액이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산정근거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3조(지원대상)에서는 보험료 지원대상을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저 소득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해당 세대로 명확히 규정을 하였으며, 또한

제4조(지원시기 및 방법)는 현재 보험료를 해당가구에 직접 지원하던 것을 보험공단에 일괄지원(대상 995세대, 보험료 4,000천원/월)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이 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3.22, 2006.3.24, 2007.10.17, 2007.12.14, 2009.6.9>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1의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의2.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0>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4, 2009.6.9>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4, 2009.6.9>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6.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0.1.18>

1.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제출하는 자료
2.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는 자료
3. 제33조의4에 따라 결정하는 보호의 실시여부 및 유형에 관한 자료
4. 제33조의5에 따라 수립하는 보호계획 및 평가에 관한 자료
5. 제33조의6 및 제33조의7에 따라 실시하는 보호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본조신설 2007.12.1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2005.12.23, 2008.2.29, 2010.1.18>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 3. 의료급여
- 4. 교육급여
- 5. 해산급여
- 6. 장제급여
- 7. 자활급여

②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③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④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28>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5.15, 2004.3.5, 2006.12.28, 2007.8.3, 2008.2.29, 2010.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2.6]

□ 「국민건강보험법」

제2장 가입자

제5조(적용대상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개정 2001.5.24, 2006.10.4>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
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6장 보험료

제62조(보험료) ①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
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
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6.10.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격이 변
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
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6.10.4>

④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
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06.12.30>

⑤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
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6.10.4, 2006.12.30>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①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③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전문개정 1999.12.31][제목개정 2006.12.30]

제65조(보험료율 등)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제목개정 2006.12.30]

제68조(보험료의 납부의무)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③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장기요양보험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9.3.18, 2010.1.18>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93조의2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19]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 3.19, 타법개정]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2008.1.15, 2008.3.3, 2010.3.19>

□ 「아동복지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3>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의안번호 제2010 - 27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0. 6.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0. 7. 8.

II 개정이유

- 기능직공무원의 상위 직급 정원채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따라 쇠퇴하는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가.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기능6급 : 5% 이내(현행) → 7% 이내(조정 : 증 2%)
- 기능7급 : 14% 이내(현행) → 20% 이내(조정 : 증 6%)
- 기능8급 : 20% 이내(현행) → 24% 이내(조정 : 증 4%)
- 기능9급 : 29% 이내(현행) → 31% 이내(조정 : 증 2%)
- 기능10급 : 32% 이상(현행)→18% 이상(조정 : 감14%)

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 5명

- 현행 : 473명(본청213명, 의회5명, 직속기관63명, 사업소31명, 읍33명, 면128명)

- 조정 : 478명(본청217명, 의회5명, 직속기관63명, 사업소31명, 읍33명, 면129명)

○ 기능직 정원 : 감 5명

- 현행 : 81명(본청44명, 의회6명, 직속기관4명, 사업소14명, 읍 5명, 면8명)

- 조정 : 76명(본청40명, 의회6명, 직속기관4명, 사업소14명, 읍 5명, 면7명)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2010년 예산반영

※ 정원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 232,205,740원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별표로 같음

(2) 입법예고(2010. 4. 24 ~ 2010. 5. 14) 결과 : 없음

V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직급별 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또한 직무범위의 변동 등 행정수요에 따라 쇠퇴하는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능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본청 및 의회사무과 등 전체 공무원의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다만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정원 81명중 5명을 감원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직급별비율을 기능10급의 정원 32%를 18%로 감원(감14%)하여 상위직급으로 조정함으로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행정수요에 따라 일부기능을 조정하는 것임.
- 이 밖에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8.18] [대통령령 제21689호, 2009.8.18, 타법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